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 통장 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전용면적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천안 동문 디 이스트 파크시티</th><th>천안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th><th>대전광역시</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59㎡A · 59㎡B 74㎡A · 74㎡B 84㎡A · 84㎡B</td><td>200만원</td><td>25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td><td>300만원</td><td>4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5㎡</td><td>400만원</td><td>700만원</td></tr><tr><td>모든 면적</td><td>전 타입</td><td>500만원</td><td>1,0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천안 동문 디 이스트 파크시티	천안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59㎡A · 59㎡B 74㎡A · 74㎡B 84㎡A · 84㎡B	2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5㎡	4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전 타입	500만원	1,000만원
구 분	천안 동문 디 이스트 파크시티	천안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59㎡A · 59㎡B 74㎡A · 74㎡B 84㎡A · 84㎡B	2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5㎡	4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전 타입	500만원	1,000만원																					
당첨자 선정 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1순위 가점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1순위 추첨제 : ① 지역 → ② 추첨 2순위 : ① 지역 → ② 추첨 ① 지역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② 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 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 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④ 추첨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tr><th>구 분</th><th>천안 동문 디 이스트 파크시티</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tr><td>전용면적 60㎡ 이하</td><td>59㎡A · 59㎡B</td><td rowspan="2">40%</td><td rowspan="2">60%</td></tr><tr><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td>74㎡A · 74㎡B · 84㎡A · 84㎡B</td></tr><tr><td>전용면적 85㎡ 초과</td><td>105㎡</td><td>-</td><td>100%</td></tr></table>				구 분	천안 동문 디 이스트 파크시티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59㎡A · 59㎡B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74㎡A · 74㎡B · 84㎡A · 84㎡B	전용면적 85㎡ 초과	105㎡	-	100%						
구 분	천안 동문 디 이스트 파크시티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59㎡A · 59㎡B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74㎡A · 74㎡B · 84㎡A · 84㎡B																							
전용면적 85㎡ 초과	105㎡	-	100%																					
비고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가점제란?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청약가점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이것만은 꼭!
무주택 기간 [총점 32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어습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무주택기간 산정 대상자 : 주택공급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 청약 신청 연령 기준 만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만 나이" 기준으로 선정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단,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이후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만 30세 미만으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 점수는 "0"점 입니다.	▶ Tip 무주택기간산정은 "만" 나이로 계산 해야 됩니다. ▶ 실수 사례 예)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5년 06월 20일(금) 기준 1995년 06월 20일생의 경우 • 입력 내용 한국 나이로는31세로 무주택기간을 "1년 이상(4점)"으로 입력(X) • 실제 점수 실제 나이는 만 30세 무주택기간을 "1년 미만(2점)"으로 입력(O)
부양 가족 수 [총점 35점]	-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세대주(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그 배우자도 세대주 이어야함)로서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 안됩니다 - 미혼자녀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부양가족 산정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초본에 등재된 경우 (무주택일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초본에 등재된 경우 (무주택일 경우) 조부 조모 조부 조모 부 모 조부 조모 조부 조모 장인 장모 형제자매 동거인X 본인 (세대주) 배우자 형제자매 동거인X 자녀 자녀(기혼)X 자녀의 배우자 X 손자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인 경우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표초본에 등재된 경우 손자 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미혼인 경우 (단, 청약자 동일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 Tip 부양가족 산정 시 "청약자 본인은 제외" 입니다. ▶ 실수 사례 예) A씨의 사례 • 입력 내용 A씨는 단독세대주인데 본인을 부양가족수로 계산하여 "1명" (10점)으로 입력(X) • 실제점수 청약자 본인은 부양가족수는 제외 "0명" (5점)으로 입력(O) ▶ 유의사항 - 부양가족수는 본인은 제외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며,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총점 17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실제 인터넷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 가점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